

「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9년 5월 31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19년 6월 10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47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19년 6월 11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농축산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평창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 지원을 통해 농업을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, 고령화, 공동화 등 농업인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농촌지역에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청년농업인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4조 ~ 제5조)
-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청년농업인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최순철)

- 본 조례안은 평창군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청년농업인이 안심하고
의욕적인 농업활동을 할 수 있는 농업기반과 농촌 정착 여건을 지원하고자
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,
-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1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
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
안 제3조에서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군수 등의 책무
안 제5조에서는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유형
안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 신청과 선정에 관한 사항
안 제9조에서는 지원취소 등에 관하여 각각 정하였습니다.
- 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.

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평창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농업을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과 농촌 정착 여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농업”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.
2. “청년농업인”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.
 - 가.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(예정)한 사람
 - 나. 평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
3. “창업”이란 본인 명의의 농지·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(임차 포함)하고 직접 영농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군수 등의 책무) ①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매년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청년농업인은 농업·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·공급과 농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업 및 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청년농업인 지원계획) 군수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창업준비단계, 창업단계, 창업 이후 단계별 교육, 컨설팅 등 지원
2. 정착초기의 생활비 부담 지원
3. 사업자금 지원
4. 영농기술의 습득과 지원
5. 농촌주민과의 유대와 생활환경 적응 문제
6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지원사업)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창업에 필요한 기초시설 등 지원
2. 창업을 위한 경영실습 임대농장 지원
3. 결혼, 주거 및 창업 등 생활안정 자금 지원
4. 지역선도농가 멘토링, 컨설팅지원
5.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국내 연수 지원
6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신청 및 선정) ①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매년 1월 말일까지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전문가와 함께 현지 확인을 하고, 법 제15조에 따른 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.

제7조(청년농업인 실태조사 등) 군수는 청년농업인 계획수립 및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으며,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.

1. 청년농업인 애로사항
2. 청년농업인의 농촌정착 실태
3.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의 평가
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지도·감독)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

황 등 필요한 경우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 그 업무를 확인·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.

제9조(지원 취소 등) 군수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1.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
2.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(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)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
3.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
4.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
5.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10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,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